

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안내문

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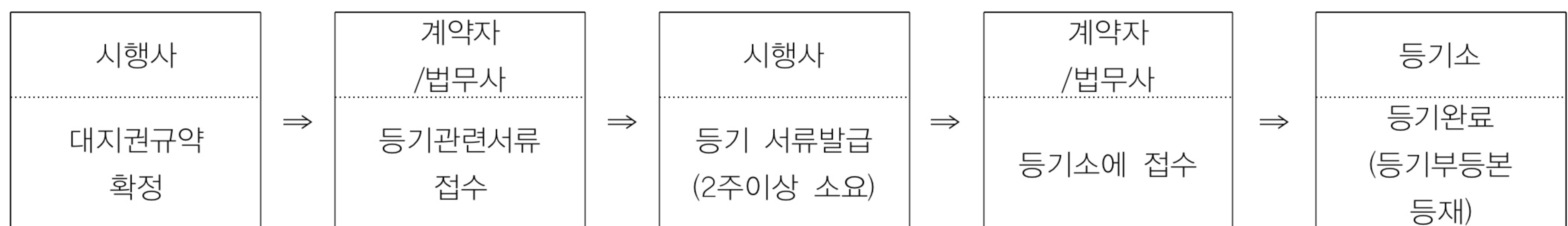
고객님께서 입주하고 계신 “가온마을 3단지”의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정리가 완료되어 각 세대별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, 안내문을 숙지하시어 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특히, 아파트(근린생활시설) 세입자(임차인)께서는 반드시 소유자에게 연락하시어 관련 안내를 전달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.

■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

▷ 등기신청기간 : 2021.02.08(월) ~ 03.31일(수)

■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절차



1) 당사에서는 법무사를 지정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선임한 법무사 또는 개인이 직접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.

- ▶ 법무사 위임 신청시 : 법무사를 선정하신 후, 해당 법무사 사무실로 등기서류를 접수하시면 등기업무 일체를 대행하여 집행합니다.
- ▶ 관련서류 접수 장소는 하단에 기재

2) 개별등기 신청 시 (시행사에서 서류를 교부받아 고객님께서 직접 등기 신청 하시는 경우)

1 단계	시행사에 대지권이전등기 계약자 / 법무사 신청 → 한신공영으로 송부
[준비서류]	
① 위임장 1부 (첨부서류(위임장) 참고)	
② 주민등록초본 1부 (주소 변동사항 기재 - 3개월이내 발급)	
③ 집합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1부 (3개월이내 발급)	
④ 신분증 사본(연락처 기재)	

※ 대지권 비율은 첨부된 대지권규약을 필히 참고하시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 단계	1단계 서류를 접수 후 관련서류 발급 후 계약자(셀프등기) 및 법무사로 송부(수령)
<p>[시행사 발급서류]</p> <p>▷ (법인인감 날인) 위임장 ② 인감증명서 ③ 대지권규약 ④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</p> <p>※ 매주 수요일까지 접수(등기우편)된 건에 한해 주1회 각 시행사에 날인요청하여 취합된 등기서류 분출예정 각 시행사의 결재일정 및 접수량에 따라 최소 2주일 이상 소요</p>	
3 단계	<p>등기소에 직접등기 신청(시행사 발급서류 및 관련서류)</p> <p>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☎1544-0773</p>
<p>① 시행사 발급서류 지참 (위임장, 인감증명서, 대지권규약, 등기필정보)</p> <p>② 등기소에 필요서류 사전 확인 필요 (취득세 영수증 사본, 채권 영수증 사본, 주민등록초본, 등기부 등본(시행사), 신분증 사본 등)</p>	

■ 접수 및 서류발급 - 셀프등기 및 법무사 등기 동일

<p>[접수]</p> <p>▷ 한신공영 마케팅부 등기 접수/발송 ☎02-3393-3320 [주소 : 서울 서초구 잠원로 94 한신공영 4층]</p> <p>※ 코로나19로 인하여 담당자 직접접수 어려움</p>	
<p>[법무사 대리 등기]</p> <p>▷ 다수건수(10건이상) 진행에 따른 접수는 한신공영 마케팅부서로 직접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.</p>	
<p>[서류 발급]</p> <p>단지별 취합 후 가온마을3단지 경우 한신공영에서 서류 발급 이후 직접 등기발송</p>	

■ 기타사항

1) 등기 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본인의 책임이므로 등기 신청 시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2)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는 시행사(한신공영, 제일건설)의 (법인으로 날인된) 위임장,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3) 기타문의 사항 :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☎1544-0773
한신공영 마케팅부 ☎02-3393-3320